

부산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가단330283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종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훈, 윤혜주

변 론 종 결 2023. 4. 4.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616,222원 및 그 중 124,007,655원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절경 등 4세트의 의료기기를 취득원가 176,000,000원, 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3,361,900원, 리스료 지급일 매월 15일,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병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이 위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8. 1. 3. 해지되었다.

라. 2022. 5. 19. 기준으로 이 사건 병원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235,616,222원(=원금 124,007,655원, 연체이자 111,608,5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리스 원리금 235,616,222원 및 그 중 원금 124,007,655원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자신은 2017. 5. 30.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고, E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2017. 8. 3. 원고에게 연대보증해지의 의사표시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원고에게 연대보증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설령 원고가 피고가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 지위를 피고에서 이 사건 병원의 새로운 이사장 등의 제3자로 변경해야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관한 사안으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정